

청년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4
----------	-------

발의연월일 : 2018. 5. 21.

발 의 자 : 이명수 · 강효상 · 권철승
김병관 · 김종훈 · 김중로
김해영 · 박순자 · 박 정
박찬대 · 신보라 · 염동열
위성곤 · 이채익 · 임종성
정유섭 · 정인화 · 채이배
의원(18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 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제3항).
- 라.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마.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안 제7조).
- 바.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

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7조).

하.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청년정책에 관한 국회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안은 청년미래 특별위원회(2017. 11. 9. ~ 2018. 5. 29.)의 심사와 의결(2018. 5. 18, 제8차 전체회의)을 거쳐서 마련되었음.

청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해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참여 촉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거주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 “청년”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하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기본시책
 - 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 나. 청년의 고용확대
 - 다. 청년의 창업지원
 - 라. 청년의 능력개발
 - 마. 청년의 주거지원
 - 바. 청년의 복지증진
 - 사. 청년의 금융생활지원
 - 아. 청년의 문화활동지원
 - 자. 청년의 국제협력지원

차.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

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해 청년 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창업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정신을 고취시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상담,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확충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비용 지원금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청년 신혼가구 또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 환경 마련 등의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원

할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문화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기반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청년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청년단체 지원 등

제25조(청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청년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년시설의 지원 및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의 범위 및 지원절차·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청년단체 또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조세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청년정책에 관한 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실태조사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청년시책에 대한 계획 및 추진실적과 청년실태조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